

◆ 재직자 직업훈련

Q1.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할 때에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http://www.hrd.go.kr/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 소요되며, 서면형태의 카드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Q2.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실직을 하였더라도 카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남아있다면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의 사용은 중지가 됩니다.

Q3.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직·일용직 근로자는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며, 훈련과정 검색은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비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에 훈련과정의 80%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한 후, 비용 신청을 하면 훈련비의 5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신청서에 1.주민등록증(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의료보험증 등)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교과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등록기준지 확인 7.최근 6월 이내 촬영한 증명판 사진 8.수입인지(2000원)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2항 별표1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7-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들어가서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기준 검색)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Q1. 상담을 위한 방문은 언제 하면 되나요?

A: 월~금 오전 9:30, 오후 14:30 일일 2회 직업훈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설명회 시작 10분전까지 센터 4층 직업훈련 설명회장으로 입실하시어 교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훈련 상담 이후 재취업활동, 훈련과정 탐색, 동영상 시청, 신청서 작성 등을 모두 하신 분은 신분증 지참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은행계좌연계로 오후4시 이전에 방문해야 전산등록 및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Q2.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 회계 및 경리 관련사무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 디자이너, 이·미용분야, 주방장 및 조리사 분야는 훈련비 중 45%를 본인이 내셔야 하고 그 외의 분야는 2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3. 무료로 훈련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 훈련은 없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권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취약계층 특별과정 수강자 등에 한하여 자비부담이 면제 되며,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운전 및 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및 의복, 농림어업 관련 직종 훈련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2층 취업지원팀 (032-540-582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계좌카드 만들어 놓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반납해야 하나요?

A: 계좌카드는 반납 하지 않습니다. 계좌의 유효기간(1년)이 만료 되면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Q5.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계좌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Q6. 훈련 지원금 200만원은 언제 주나요?

A: 지원한도 200만원이라는 의미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관에 납부해야할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상계좌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Q7. 신청 후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취업 (아르바이트 포함) 및 창업을 하시면 담당 상담원에게 유선으로 일하고 있음을 통보해야 하며, 훈련수강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더라도 근로 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강 중인 과정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또는 창업 이후 시작되는 훈련과정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8. 과거에 계좌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지금도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나 2회 이상 미수료, 수강 포기한 경우에는 재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는 훈련 상담 후 계좌 지원한도(200만원)가 재부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발급받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나 계좌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연속하여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 상담을 통해 계좌 지원한도(100만원)가 재부여 될 수 있습니다.

Q9. 카드 신청 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 할 수 있나요?

A: 계좌카드발급은 요건을 갖춘 구직자의 계좌발급 신청과 이에 따른 담당자의 훈련 상담을 통해 발급이 확정되면 카드사에 카드발급이 요청되고 이를 토대로 카드사에서 구직자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카드 제작에 들어갑니다. 계좌 카드 제작에 들어가면 신청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Q10. 사용중지 처리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 기간 내 중지된 카드를 다시 사용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하셔야 합니다.(구직신청 마감으로 카드 사용중지의 경우만 유선상담 처리 가능) 카드 사용 중지가 되었다고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효력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11. 훈련분야는 하나만 할 수 있나요?

A: 훈련 참여분야는 구직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 1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발급 신청 시 선택한 분야로 훈련을 수강하고 난 뒤 해당 분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훈련 분야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 한해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신청직종이 현재의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훈련 수강 후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직종 변경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12.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카드를 만들어 놓으려 하는데요?

A: 계좌제 카드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신청하시고 3개월 이내에 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중지되며 중지된 상태에서는 훈련생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고 복구해야 사용가능하며, 사용 중지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 후 훈련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미수료, 수강 포기한 경우 추후 재발급 및 재부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Q13. 카드를 빨리 나오게 좀 해 주세요

A: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계좌발급여부를 결정(카드발급요청)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카드의 제작부터 배송 업무는 카드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카드사측에 빨리 배송 받아야 함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농협 배움카드(체크)의 경우 지정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익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농협계좌로만 카드 발급 가능)이 합니다.

Q14. 훈련생 본인의 출결 상태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개인의 출결상황은 HRD-Net 내일배움카드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클릭 → 개인회원서비스 → 훈련이력조회 → 훈련결과 클릭 → 팝업창에서 출결관리정보를 확인

◆ 고용보험관리(실업급여 수급자격)

Q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기타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진단일은 퇴사일 전이어야 하며 치료 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되어야 함. 단, 주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인 경우 수급자격인 제한될 수 있음.),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가능여부(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원거리 인사발령 등)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결혼 등)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4: 임금체불(지연 포함)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A: 퇴사일 이전 2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불(지연)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사일 전 2개월 이상'의 예시 : 가령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인 3월 5일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2개월 이상 체불임(지급일 넘어서 받았으면 지급지연임).

◆ 고용보험관리(피보험자관리)

Q1: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인터넷접수(www.ei.go.kr)하면 됩니다. 그밖에도 우편, 팩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407-8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3층 기업지원과
팩스: 0505-130-0035

Q2: 취득일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취득일을 정정하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우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제출할 경우 0505-130-0035로 전송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Q3: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취득신고를 취소하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우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제출할 경우 0505-130-0035로 전송해하면 됩니다.

Q4: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A: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주로 당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당면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체류자격은 F2,F5,F6가 있고, 임의가입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해당 체류자격은 H2,E9,F4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 방식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등록증사본과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5: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퇴사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실(퇴직)사유 정정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우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제출할 경우 0505-130-0035로 전송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Q6: 피보험자격 이력확인 증명서가 발급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 증명을 위한 서식을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외국인 고용 허가

Q1: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A: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등록하여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원하는 인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외국인 구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등록 후 14일 경과 후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제조업)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Q2: 외국인 체류기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고용(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 단,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합의 퇴사 등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되고(팩스로도 신고가능)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Q4: 외국인근로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5일이상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로 고용변동신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5: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까?

A: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Q6: 외국인근로자가 일한다고 찾아왔는데 고용하면 됩니까?

A: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알선장을 받아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는 알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채용 및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7: 팩스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인천북부고용센터 외국인력팀 팩스번호는 0505-130-0036번입니다.

Q8: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45번입니다.

◆ 임금 체불

Q1: 인터넷으로 체불임금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화면에 보이는 『e-고객센터』를 클릭하시고, 고객센터 화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 서식 중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선택하시고 작성하시면 전산으로 접수가 됩니다.

※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Q2: 체불사건이 종료 되었는데,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체불임금 확정 뒤 사용자를 인천 지방검찰청에 기소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우리 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산재예방지도

Q1: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1: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철거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최소 7일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2: 등록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0m^2$ 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합계가 $200m^2$ 이며,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A3: 지정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 사업장 기준과 선임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참조)입니다.

A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3: 안전관리자 자격은 자체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A4: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시행령 제12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는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서식)를 작성해서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Q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별로 정해져있는 시기(6개월, 1년, 2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Q5: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A: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공통사항

Q1: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찾아오시는 길>

인천북부고용센터

- 지하철: 인천1호선 임학역 2번출구도보 10분
- 버스: 24-1, 76, 79, 80, 88, 302, 581, 588, 902, 905, 111-2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2~5층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 지하철: 인천1호선 임학역 2번출구(도보 15분)
- 버스: 24-1, 76, 79, 80, 88, 302, 581, 588, 902, 905, 111-2
-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